

# 「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」

## 일부개정훈령안

### 1. 개정 이유
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따라 본 훈령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가. 유효기간을 3년 연장(안 제55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없 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국토교통부훈령 제1685호

## 「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」

### 일부개정훈령안

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5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5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본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제55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